

물 품 공 급 계 약 서

부산우리농영농조합법인(이하 '우리농')과 성모성심유치원(이하 '유치원')은 우리농 물품 이용 및 상호교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

제 1조(목적)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안전한 먹을거리로 밥상을 차리는데 있어, 우리농 물품 이용 및 상호교류를 넓혀가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프로그램 운영) 우리농과 유치원은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- ① 유치원 아이들, 학부모, 교사 대상의 강좌(생태환경, 지구 살리기, 즐거운 불편 등)
- ② 유치원 아이들, 학부모, 교사 대상으로 우리농의 생산지 방문
- ③ 기타 우리농에서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

제 3조 (협약의 성립 조건, 유지, 파기)

계약의 성립조건은 유치원의 전체 식재료비의 30% 이상, 월 2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.

'우리농'은 매월 유치원의 공급액과 이용횟수를 확인하여 계약의 유지를 판단한다.

계약의 성립조건이 3개월간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'유치원'이 성립조건을 확인하기 '우리농'에서 관련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.

제 4조(계약의 해석)

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, 본 계약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'우리농'의 해석에 따른다.

제 5조(납품 및 검수)

- ① '우리농'은 '시설'의 발주분에 대하여 정한 장소로 기일 엄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,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.
- ② '유치원'은 '우리농'이 납품한 물품을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하여 '우리농'은 마감 일자와 일치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. 단, '유치원'에서 카드 결제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다.
- ③ 물품 인수 시 파손, 부족 등의 물품 하자 발생시 '우리농'은 '유치원'에 알려야 하며 상품을 보충 또는 대체 공급할수 있다.

제6조 (계약기간)

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에 관한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통보가 없을 경우 이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1년 자

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 7조(위생점검)

필요시 '유치원'은 '유치원'의 시설, 설비, 식재료 보관,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'우리농'은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
2025년 5월 1일

'우리농' 부산우리농영농조합법인



'유치원' 성모성심유치원

